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3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 안규백·오세희·허성무

이개호 • 이병진 • 부승찬

김병주・황 희・조인철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 기·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훈련·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

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3호 중 "중요한"을 "숙련인력 확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를 "하고, 전역 보류기 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를 "보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역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 ③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중요한</u> 작전이나 훈련·연습	3. <u>숙련인력 확보 및</u>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	6		
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			
후 <u>3개월</u> 이내로 <u>한다</u> . 다만,	<u>6개월</u> <u>하고, 전역 보류</u>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		
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	한다보류가 부적합하다고		
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판단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		
한다.	<u>을 희망하는 경우에는</u>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